

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행계획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0년도 제10회 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변경

- 기존 10일간 진행하던 정기 원서접수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놓친 수험자의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환불기간 종료 후 2일 간 환불자 범위 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변경 전(前)	변경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 • 2일 간 추가 원서접수 도입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2. 2021년도 제11회 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예정)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면제서류 접수·심사	원서접수 (2·3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 24(월) 09:00 ~ 3. 6(금) 17:00 [10일간, 토·일 제외]	(정기접수) [5일간] 3. 2(월) 09:00 ~ 3. 6(금) 18:00 (추가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4. 9(목) 09:00 ~ 4. 10(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 18(토)	5. 20(수)
제2차 시험		(정기접수) [5일간] 5. 25(월) 09:00 ~ 5. 29(금) 18:00 (추가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6. 11(목) 09:00 ~ 6. 12(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6. 20(토)	7. 22(수)
제3차 시험		8. 3(월) 공고예정	8. 7(금)~ 8. 8(토)		8. 26(수)	

-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추가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	
제1차 시험	공통필수 (3과목)	① 공통필수 I (산업안전보건법령)	과목당 100점	
		산업안전		② 공통필수 II (산업안전일반)
		산업보건		② 공통필수 II (산업위생일반)
		③ 공통필수 III (기업 진단·지도)		
제2차 시험	전공필수 (택1)	산업안전	과목당 100점	
		산업보건		
제3차 시험	공통필수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지도 능력 	10점 만점	

나. 출제범위

○ 제1차 시험 (공통필수)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과목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시험방법
공통필수	산업안전보건법령 (I)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I)	산업안전지도사와 동일	객관식 5지 택일형
	산업안전일반 (II)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일반 (II)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 산업재해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기업진단·지도 (III)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기업진단·지도 (III)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제2차 시험 (전공필수)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과목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시험방법
전공필수	기계안전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 (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 - 공장지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기구·설비의 설계·배치·보수·유지기술 등 	직업환경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산업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주관식 (논술형, 단답형)
	전기안전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화공 안전 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산업 위생 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유지관리 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건설 안전 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용 기설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낙하·붕괴·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다. 과목별 시험시간 및 평가법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	시 험 시 간	문항수	시 험 방 법
제1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통필수 I ② 공통필수 II ③ 공통필수 III 	13:00	13:30 ~ 15:00 (90분)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5지선택
제2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필수 	13:00	13:30 ~ 15:10 (100분)	과목별 9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논술형(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5문항)
제3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지도 능력 	수험자 1명당 20분 내외		-	면접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라. 출제영역

- 큐넷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 게재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합격자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 (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지정서로 확인)
-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
-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 8)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 '별표32'는 붙임 참조

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 경력 및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2020. 3. 6(금))

라. 면제자 증빙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20. 2. 24(월) ~ 3. 6(금) 17:00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 가항 1), 2)호 해당자
 - 기술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은 미제출(공단 자체 확인)하므로 제출서류 없음.
 - ◆ 가항 3)호 해당자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 가항 4)호 해당자
 -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박사학위증(전공분야가 건설·화공·기계·전기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중 하나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함) 1부.
 - 외국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증과 함께 학과커리큘럼도 제출(반드시 대사관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증명을 받아 번역공증(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하여 제출)

◆ 가항 5)호 해당자

-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박사학위증(전공분야가 건설·화공·기계·전기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중 하나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함) 1부.
- 외국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증과 함께 학과커리큘럼도 제출(반드시 대사관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증명을 받아 번역공증(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증명서)하여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공단 소정양식) 1부(다음의 경력만 인정)

-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경력증명서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명시)
-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아래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www.ei.go.kr ☎ 135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www.nhic.or.kr ☎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www.nps.or.kr ☎ 1355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직접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급번호가 있어야 함

◆ 가항 6)호 해당자

-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1부(원본 제시)

◆ 가항 7)호 또는 나항 해당자

- 고용노동부 자격취득자 명단을 이관받아 등록하므로 별도 제출 서류 없음(취득자임에도 원서접수 시 ‘해당없음’으로 표시되면 반드시 052-714-8495로 문의바랍니다.)

■ 가항 4)호 및 5)호에서 전공분야가 건설·화공·기계·전기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중 하나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 (국내학위의 경우) 세부전공증명서(별첨)를 작성하여 총장(또는 대학원장, 학과장) 명의로 공단 서류심사 지부·지사로 전자문서 송부할 경우 인정
- ◆ (외국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증에 전공분야가 건설·화공·기계·전기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이라고 기재되지 않은 경우, 취합하여 별도 심사 후 결과 통보

■ 제출서식 다운로드

- ◆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세부전공증명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 우편접수의 경우 2020. 3. 6(금)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기관 : 하단의 시행기관 참조

-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12년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 접수 시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마.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제출기간 : ‘20. 2. 24(월) 09:00 ~ 3. 6(금) 17: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16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84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2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5

※ 등기우편 제출 시 ‘20. 3. 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 경력증명서 재증” 표기

바. 업무 종사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20. 3. 6)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사. 경력서류 제출 면제

○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동일 서류 제출 면제(‘12년도 이후 제출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서류 제출 불필요(전산 연동 가능)

아. 면제내역 확인 방법

○ Q-Net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에서 본인의 면제내역 확인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정기 원서접수 : 2020. 3. 2(월) 09:00 ~ 3. 6(금) 18:00 [5일간]

- 추가 원서접수 : 2020. 4. 9(목) 09:00 ~ 4. 10(금) 18:00 [2일간]

○ 제2·3차 시험(동시접수)

- 정기 원서접수 : 2020. 5. 25(월) 09:00 ~ 5. 29(금) 18:00 [5일간]

- 추가 원서접수 : 2020. 6. 11(목) 09:00 ~ 6. 12(금) 18:00 [2일간]

※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 2. 24(월) 09:00 ~ 3. 6(금) 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 접수 진행 (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최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나. 접수방법

○ 큐넷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응시자 공통사항]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

다. 수수료 납부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응시수수료 : (1차) 55,000원, (2·3차) 75,000원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6조]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정기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

○ 정기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제3차 시험은 동시접수로 진행되므로, 환불기간은 제2차 시험 환불기간과 동일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p><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필기(답)형 시험	작업형 시험	제출서류	
시각장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지체장애	상지	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②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하지	③ 하지 (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④ 복합장애 [상지+하지]		■ 상지장애와 동일	■ ① 또는 ②의 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①,②,③호 중 하나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장애정도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미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미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9.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 4. 18(토) 17:00 ~ 4. 24(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 5. 20(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 제2차 시험 : '20. 7. 22(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문항별 득점 및 총득점

○ 제3차 시험 : '20. 8. 26(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득점, 평균점수

○ 발표방법

- 큐넷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 : 60일 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 간

나. 합격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 제1·2·3차 시험 합격자

○ 발급방법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큐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확인서발급 - 신청·발급

- 발급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계속

다. 지도사 등록 신청

- 신청기관 : 주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제1항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1.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처리**
 - ※ 시험전일 18:00부터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 - 진행중인 접수 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 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4)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 15)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제1차(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제2차(주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차(면접)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과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기구·설비의 설계·배치·보수·유지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정량적 위험성평가, 위험물누출·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 추락·낙하·붕괴·폭발 등 재해 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 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방법,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 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 기술 등
공통 필수 I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 필수 II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시험 범위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 필수 III	기업진단·지도					
시험 범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박사학위 세부전공 증명서(공단양식)

1. 학교 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박사학위 관련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위취득일자			
대학원명		학위등록번호	
학과명			
세부전공(택1)	<input type="checkbox"/> 건설안전 <input type="checkbox"/> 화공안전 <input type="checkbox"/> 기계안전 <input type="checkbox"/> 전기안전 <input type="checkbox"/> 직업환경의학 <input type="checkbox"/> 산업위생공학		

붙임 : 박사학위증명서

위와 같이 박사학위 세부전공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 처리(응시 · 면제자격 서류심사 등)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험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 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644-8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 라 함)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 · 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학력 및 경력사항 등(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수상경력, 해외 체류경력, 연수활동 및 사회활동 등)
- 본인이 응시 · 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2.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시 · 도청 등 자격증 발급기관, 4대 보험 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TOEIC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및 응시 · 면제자격 심사자(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 · 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사항, 기타 입증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응시 · 면제자격 심사자(기관),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3. 본인은 위 1~2호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 ·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니다 .

4. 본인은 공단이 응시 · 면제자격 심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조회정보	국민연금가입증명	확인일자	성명	(인)
	건강보험자격득실			